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United States Non Tariff Barriers Issue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탕, 쿠키 등 가공식품 대상 유해 식품첨가물 5종의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 가공식품 및 간식류에 5가지 독성 화학물질 사용 규제 계획

2023년 2월 2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유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Assembly Bill 418》을 최초로 발의함.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탕, 쿠키 및 기타 인기 식품 품목에 5가지 독성 화학물질(식용 색소 적색 3호, 브롬화 식용 유지,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식용 색소 적색 3호, 브롬화 식용 유지,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이산화 티타늄은 발암 위험, 신경계 손상, DNA 손상 등 공중 보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현행 기준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시판용 가공식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EU(유럽연합)는 시판용 가공식품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Assembly Bill 418》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협을 규제하고자 함

※ 5가지 독성 화학물질 및 위험성

- 식용 색소 적색 3호(Red Dye No. 3) :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사탕, 쿠키 등의 식품에 포함됨. 암 발생 위험이 있음
- 브롬화 식용 유지(Brominated vegetable oil) : 식물성 기름으로 몸에 축적되어 신경계를 포함한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침.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을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함
-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1990년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을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함
- 프로필 파라벤(Propyl paraben) : 호르몬과 생식계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6년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지만, 미국에서는 방부제로 사용됨
-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 DNA 손상과 면역체계 손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2년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함. 미국에서는 '스키틀즈'와 같은 간식류에 사용됨

2025년 1월 1일 시행 계획, 미국으로 간식류와 가공식품 수출 시 주의 필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5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의 행위가 금지될 계획임. 한국은 하기의 사용 기준에 따라 식용 색소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식류 또는 가공식품 제조 시 식용 색소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 성분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향후 미국으로 해당 식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Assembly Bill 418》의 규제 내용과 시행 동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식용 색소 적색 3호 및 이산화 티타늄 한국 사용 기준

성분명(용도)	사용 기준
식용 색소 적색 3호 (색소)	다음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 10. 향신료 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단무지 제외)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이 미첨가된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2. 커피(표면 장식에 한함) : 0.1g/kg 이하(식용 색소 적색 40호, 식용 색소 청색 제1호, 식용 색소 황색 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g/kg 이하)
이산화 티타늄 (착색료)	다음의 식품에 사용되어선 안됨 :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식빵, 카스텔라,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잼류, 유가공품,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알가공품, 어육가공품류,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면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과·채음료 제외),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및 홍삼음료, 장류, 식초,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단무지, 조림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조미김, 벌꿀류, 즉석조리식품, 레토르트식품,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출처

EWG, Landmark bill would protect Californians from harmful additives in food and candy, 2023.02.22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B-418 Food product safety, 2023.02.02